



## 자활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

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(이하 “LH”)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)은 자활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“LH”와 “개발원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‘LH 매입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(이하 “LH 매입상가”) 및 지하·반지하주택을 주거복지 안전망 및 자활근로사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협약기관간 역할 분담과 협력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 및 공동협력) 협약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
제3조(협약사항)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“LH”는 본 협약 이행을 위한 공간 제공 조직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- ① “개발원”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에 시중 시세의 50% 또는 무상으로 매입상가 임대
  - ② “개발원”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에 무상으로 지하·반지하주택 임대
  - ③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
2. “개발원”은 본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- ① 자활근로사업 추진공간이 필요한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고 해당 공간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
  - ② 지하·반지하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안정이 필요한 자활근로자 선정, 입주
  - ③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

제4조(상호협약)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며,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5조(보안유지) 협약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협약기관의 동의 없이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전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) 협약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해지하여야 한다.

2022년 12월 15일

(이 협약서는 전문 및 본문 제1조부터 제7조까지임)



한국토지주택공사  
서울지역본부

본부장 조 인 수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'조인수' (Jo In-su),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.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원장 정 해 식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'정해식' (Jeong Hae-sik),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.